

2024년 제5회 건축소위원회(건축해체 분야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오류동 1633-3번지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서구	심의일자	2024. 6. 4.		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신인호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					
	지 번	1633-3	관련지번 -			
	대지면적	1,649.8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공업지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150.3㎡	건폐율 69.72%	층 수	지상2층	
	주 용 도	공장	구 조	일발철골구조	건축물 동수	1개동
	최고높이	10.5m	용적률	127.7%	연면적 합계	2,106.85㎡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 건축물 1개동 전체 해체		해체 연면적		2,106.85㎡	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	x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		x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	
	(건축)분야	- 지붕 판넬 적재 위치는 크레인 장비 인양 범위 및 크레인 위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것 - 철골보(산소절단) 해체 시 안전요원 배치계획서에 반영 요함(지붕재)				
	(구조)분야	-				
	(토질·기초)분야	-				
(기타)분야	-	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